

【개인시민세 감면에 대해서】

재해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세가 곤란한 분은 세부담을 줄이는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면 신청은 매년마다 필요하며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해를 입었을 때】

●지진재해, 풍수해, 낙뢰, 화재, 기타 재해(이하, [재해]라 함)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감면비율 전액

첨부서류 이재증명서

●재해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① 감면비율 10분의 9

② 첨부서류 이재증명서, 신체장애인수첩

●거주용 재산(주택·가재도구)가 재해를 입음에 따라 생긴 손해 금액(보험금, 손해배상금 등에 의한 보전금은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산정)이 주택 또는 가재도구 가격의 10분의 3 이상일 때

① 소득제한 전년도 합계소득금액이 1,000 만엔 이하

② 감면비율 8분의 1 ~ 전액

③ 첨부서류 이재증명서, 재해를 입은 주택·가재도구의 명세서, 손해보험 등의 계약처·보전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생활빈곤 등】

●생활보호를 연도 중에 받기 시작한 분

① 감면비율 감면신청 후의 납기일이 남은 전액

② 첨부서류 보호증명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감면신청 당시 학생 신분으로, 균등분할납부만 해당되는 자

① 감면비율 균등분할금 전액

② 첨부서류 학생증, 재학증명서

●실업 등(※)에 의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징수를 유예해도 향후 납부 곤란이 인정되는 자로 당해년도 합계소득금액 예상액이 전년도 합계소득금액의 10분의 5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고용, 도산 등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에 한하며, 개인 사정에 따른 퇴직이나 정년퇴직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 ① 소득제한 전년도 합계소득금액이 600 만엔 이하
- ② 감면비율 5분의 1 ~ 전액 ※균등분할금만 전액
- ③ 첨부서류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 수입상황 등의 신고서,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통장

●납세의무자의 사망에 따라 납세 의무를 계승한 상속인으로 당해년도 합계소득금액 (피상속인의 합계소득금액도 포함)의 예상액이 피상속인의 전년도 합계소득금액의 10분의 5 이하로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① 소득제한 피상속인의 전년도 합계소득금액이 600 만엔 이하
- ② 감면비율 5분의 1 ~ 전액 ※균등분할금만 전액
- ③ 첨부서류 생명보험의 계약처·수취액을 알 수 있는 서류, 수입상황 등의 신고서,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통장

●납세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척의 질병 등에 따른 이상 지출 때문에 징수를 유예해도 향후 납부 곤란이 인정되는 자로 의료비의 지출액 (보험금, 손해보상금 등에 의한 보전금은 지출액에서 공제하여 산정) 이 전년중의 합계소득금액의 10분의 3 이상인 자

- ① 소득제한 전년도 합계소득전액이 600 만엔 이하
- ② 감면비율 6분의 1 ~ 전액 ※균등분할금만 전액
- ③ 첨부서류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건강보험조합 등에서 보전된 전액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상황 등 신고서,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통장

【주의사항】

신청일 이후의 납기분에 대한 감면이 원칙입니다.

신청기한은 납기한 전 7 일까지가 원칙입니다.

(예)

보통징수의 경우 : 제 1 기 납기한 2016 년 6 월 30 일(목)

납기한 전 7 일 2016 년 6 월 23 일(목)

특별징수의 경우 : 제 1 기 납기한 2016 년 7 월 11 일(월)

납기한 전 7 일 2016 년 7 월 4 일(월)

이미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과 자산, 생활 상황 등의 심사가 있으므로 심사에 따라 각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기의 첨부서류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면 사유가 몇 년에 걸치는 경우도 감면 신청은 매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처】

주오세무과(주오구청내)	전화 : 096-328-2181	팩스 : 096-324-1474
히가시세무과(히가시구청내)	전화 : 096-367-9138	팩스 : 096-367-9302
니시세무과(니시구청내)	전화 : 096-329-1174	팩스 : 096-329-1326
미나미세무과(미나미구청내)	전화 : 096-357-4143	팩스 : 096-357-4342
기타세무과(기타구청내)	전화 : 096-272-1114	팩스 : 096-215-3322